첨부3 아시아문화원 직원 결격사유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5.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
6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
7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